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공유해 드리며, 매주 목요일에 주간입법동향을 송부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 주요 법안 동향

법안 종류	키워드	주요 법안	주요 내용
발의안	중대재해	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 등 현장관계자가 구조를 필요로 하는 자를 발견 혹은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소방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인사/노무 중대재해 해상	② 항만안전특별법안	항만안전감독관과 안전확인요원 도입 및 사업자의 항만안전관리계획, 해수부가 평가한 사업자의 안전관리수준, 항만현장 점검 현황, 항만안전사고 발생 현황과 조사 결과 등의 정보 공개
국회 계류안	에너지 ESG	③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에너지 전환을 위해 불가피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에너지전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발전사업 지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공포 법령	지적재산권 정보보안	④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반드시 정보보호를 공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입법/ 행정 예고	바이오	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외국인이 국내에서 마약류취급자 허가를 받을 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 1. 발의

\*각 법률안 및 검토보고서 확인을 위해서는, 법률안 밑에 있는 링크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1	 <p><b>박주민</b> (더불어민주당)</p>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업장에서 위급상황에 처한 근로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부 보고 등으로 응급구조 신고 등의 조치가 지연되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하여, 위급상황에 처한 근로자에 대한 신고 의무를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 등 현장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은 위급한 상황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를 발견하거나 그 근로자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소방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위급상황에 처한 근로자를 안전하게 구조·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신설 등).</li> </ul> <p>출처: <a href="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2V1X0K6Z0F1C1Z3E1M8S2C5V6E6J6">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2V1X0K6Z0F1C1Z3E1M8S2C5V6E6J6</a></p>		21.06.08. 제안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2	 <p><b>맹성규</b> (더불어민주당)</p>	항만안전특별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평택항에서 한 청년이 수출입 컨테이너 세관 검수업무에 투입되었다가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고, 희생된 청년은 안전장비나 안전교육을 제공받지 않고 작업현장에 투입됨. 또한 항만운송사업 종사자에 대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안전관리 점검이나 사고조사, 통계 관리, 사업자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항만 안전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가 요구되는 실정임. 이에 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항만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규정함으로써 항만운송 분야에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li> <li>■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이 법은 항만운송사업과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자와 공중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만운송 참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율적 안전관리를 촉진시킴으로써 항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위험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li> <li>나. 항만운송 참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항만운송 참여자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그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하는 등의 기본의무 및 안전확보 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li> <li>다. 항만운송 참여자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 조직을 두도록 함(안 제8조).</li> <li>라. 항만운송 참여자에게 항만운송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내용과 안전규칙, 항만에서의 위험요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li> <li>마. 항만운송 참여자로 하여금 항만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1조).</li> </ul> </li> </ul>		21.06.07. 제안

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항만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감독관 및 안전확인요원을 두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항만의 항만운송 참여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 등을 점검하게 함(안 제14조).

사. 항만운송 참여자가 항만운송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17조).

아. 항만안전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항만운송 참여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자. 항만운송 참여자가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4조).

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2A1S0D6A0A3P1Q9H0C3W2E5P6S3G2](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2A1S0D6A0A3P1Q9H0C3W2E5P6S3G2)

## 2. 국회 계류안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3	 <p><b>양이원영</b> (더불어민주당)</p>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에너지전환 로드맵 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자력발전 및 석탄화력발전을 통한 전력생산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발전을 통한 전력생산을 확대하는 내용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li> <li>이에 에너지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및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방안의 수립을 위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화할 필요성이 제기됨.</li> <li>또한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하여 발전사업을 변경하거나 취소 또는 철회하게 된 경우, 해당 발전사업을 추진해 온 발전사업자, 해당 발전사업을 위한 발전소의 소재 지역 또는 건설이 예정된 지역, 그리고 해당 발전사업과 관련한 산업 등의 구조개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됨.</li> <li>이에 에너지전환에 따른 발전사업자, 관련 지역 및 산업 등의 구조개편 등을 지원하고 이를 위하여 에너지전환 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에너지전환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발전사업자 및 관련 지역·산업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여 모든 국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li> <li>나. 지원에 필요한 에너지전환, 발전사업자, 에너지전환 대상 발전사업, 에너지전환 대상 지역 등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li> <li>다.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지원 등의 심의·의결 및 심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에너지전환지원위원회와 비용심사전문위원회를 설치함(안 제3조 및 제4조).</li> </ul> </li> </ul>	<p>연합뉴스 21.06.01. 에너지전환정책 맞춰 원자력·석탄발전소 강제 폐쇄한다고?</p> <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10531159000003?input=1195m">https://www.yna.co.kr/view/AKR20210531159000003?input=1195m</a></p>	<p>20.10.13. 제안</p> <p>20.11.26. 상임위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p>

			<p>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사업자가 발전사업을 변경하거나 취소 또는 철회하게 된 경우 그 발전사업자가 해당 발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p> <p>마. 에너지전환을 위하여 불가피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발전사업 변경등 협약 체결에 동의하지 않는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에너지전환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발전사업을 위한 지정등을 철회할 수 있고, 지정등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에너지전환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철회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0조).</p> <p>바. 에너지전환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전환 대상 산업 및 연구기관·대학 등에 대하여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p> <p>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전환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에너지전환 대상 지역에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p> <p>아. 원자력발전소 또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는 해당 발전시설을 운전하여 생산되는 전력량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함(안 제14조).</p> <p>자. 이 법에 따른 지원금 또는 보조금의 지원을 위하여 에너지전환기금을 설치함(안 제16조).</p> <p>차. 지원 대상 비용 여부에 관하여 발전사업자와 다른 사업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이 있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지원위원회 내에 조정위원회를 둠(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p> <p>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에너지전환 목표 달성 현황 및 가능성과 에너지전환에 따른 지원 등이 에너지전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정인지 평가하도록 함(안 제22조).</p>		
--	--	--	--	--	--

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200E0C9Q2A3W1V0D1W4I0R1W9O2X6](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200E0C9Q2A3W1V0D1W4I0R1W9O2X6)

### 3. 공포 법령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일자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p>■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p> <p>최근 온라인 패션 스타트업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등 이용자의 정보보안을 위협하는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p> <p>그러나,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 제공을 매개하는 자는 정보보호 투자, 인력현황 및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하여, 정보보호의 공시를 사업자의 재량에 따른 임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보호 현황공시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2021년 5월 기준 57개의 기업만이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고 있어 공시제도의 실효성도 적은 상황임.</p> <p>이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시하지 아니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제고하고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p>	<p>뉴스1 21.06.01. "일정 규모 이상 기업, 정보보호 공시해야...의무대상 기준은 하반기에"</p> <p><a href="https://www.news1.kr/articles/?4324671">https://www.news1.kr/articles/?4324671</a></p>	<p>21.06.08. 공포</p> <p>21.12.09. 시행</p>

출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별도 파일 첨부

## 4. 입법/행정 예고 법안

번호	소관기관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예고기간
5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정이유 외국인이 마약류취급자가 되려고 하는 경우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제사무에 대한 재검토 조항을 삭제하고,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과잉행정으로 인한 권익 침해 우려가 없도록 하며,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 등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li> <li>■ 주요내용 가. 마약류 취급 보고내역에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보고 기한 연장(안 제21조제6항) 현재 마약류 취급 보고내역에 변경사항 발생 시 보고기한 종료 후 5일 이내에 변경보고 하여야 하나, 변경보고 기한을 14일 이내로 연장하여 업무 미숙 등으로 인한 비의도적 위반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나.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현행 제52조 삭제) 외국인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규제사무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당 규제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다. 행정제재 가중처분 위반차수 및 누적회차 적용규정 마련(안 별표2, 1. 일반기준 제2호의2 신설) 행정제재 가중처분 적용을 명확히 하여 과잉행정으로 인한 권익 침해 우려가 없도록 가중처분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가 적용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전의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되지 않도록 규정함.</li> </ul>	<p>연합뉴스 21.06.14. 마약류 취급 처분 기준 명확화...외국인 취급자 규제 항구 운영</p> <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10614034800017?input=1195m">https://www.yna.co.kr/view/AKR20210614034800017?input=1195m</a></p>	21.06.14. ~ 21.07.26.

			<p>라. 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행정처분 감면 기준 마련(안 별표2, Ⅰ. 일반기준 제8호 등)  마약류 취급보고 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등 전산 장애로 인하여 마약류 취급보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보고되었음이 입증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p> <p>마. 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별표2, Ⅱ. 개별기준 제9호다목 및 라목)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 이후, 보고항목, 보고주기 등은 강화되었으나 행정처분기준은 사안의 경중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부 또는 변경미보고 시 행정처분기준을 세분화하고 기한초과 보고에 대한 처분기준을 개선하고자 함.</p> <p>바. 마약류 처방전 기재사항 중 일부항목 미기재 시 처분기준 개선(안 별표2, Ⅱ. 개별기준 제18호)  마약류 처방전에 대한 기재사항 중 일부항목만 미기재한 경우에도 처방전을 미작성한 경우와 동일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일부 항목 미기재 시 행정처분기준을 신설하고자 함.</p>		
--	--	--	--	--	--

출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별도 파일 첨부

##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 [동아일보][사설]끼이고 깔리고 떨어지고, 산재로 스러지는 10대 20대 노동자(2021.06.10)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609/107358540/1>

**주요내용** 경기 평택항에서 화물 컨테이너 작업을 돕다 향년 23세로 사망한 이선호씨의 49재가 유족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주관으로 6월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치러짐. 산재 사고 피해자 10명 중 6명은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미숙련 노동자들임. 청년 노동자들의 산재 피해가 늘어나는 것도 업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사전 교육 없이 현장으로 투입되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음.

내년 1월부터는 이 같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과 경영진을 엄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 하지만 사후 처벌에만 중점을 둔 법으로 산재를 줄일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적지 않음. 숙련도에 맞는 작업을 할당하고, 업무를 숙지한 후 현장에 투입되며,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하는 예방적 산업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고 감독해야함.

### [한겨레][사설]국회, 꺾데기만 남은 중대재해법 개정 나서라(2021.06.15)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99518.html>

**주요내용**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첫 발의자인 박주민 의원이 제출한 법안명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이었음.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했으나,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선 ‘기업 및 정부 책임자’란 말이 쏙 빠짐.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 여야 의원들의 발의안 어디에도 없던 내용인데, 법안 통과를 이틀 앞두고 갑자기 ‘적용 제외’ 조항이 추가됨.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3년 유예됨.

경영책임자의 징역형 하한선이 2년에서 1년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졌고, 벌금형과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하한선은 아예 사라짐. 산재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 규제를 위반하면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인식의 확산임. 민주당은 현재 준비하고있는 시행령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지만, 모법에 중대재해를 줄일 실효성 있는 장치들이 빠져있다는 한계가 명확함. 여러 미비점들을 바로 잡아야함.

## [한국경제][사설]또 터진 후진국형 인재, ‘안전한 대한민국’ 이토록 요원한가(2021.06.10)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61065621>

**주요내용** 광주의 한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공사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승하차를 위해 정차한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함. 사고 경위를 보면 안전 불감증이 빚은 전형적인 ‘후진국형 인재(人災).’ 지속적인 사고 때마다 정부는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처벌 및 안전 관리 강화, 재발 방지책 마련 등 요란을 떨었으나 참사는 되풀이됨.

중요한 것은 근본적 인식 전환. 국민과 공무원, 업계 종사자의 안전의식과 관행이 1인당 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되지 못하면 안전사고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음. 사고가 터지면 그때뿐이 아니라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적 캠페인이라도 벌여야할 때.

## [서울신문][사설]안전불감증 현대산업개발, ‘다단계 하도급’ 뿌리 뽑아라(2021.06.10)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611031010&wlog\\_tag3=naver](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611031010&wlog_tag3=naver)

**주요내용** 광주광역시 주택재개발사업 현장에서 철거하던 5층 건물이 무너져 17명이 죽거나 다치는 참사가 일어남. 이번 참사가 일어난 학동 4구역 재개발은 현대산업개발이 4630억에 수주하였으나, 영세업자가 저지른 잠원동 사고보다 더 큰 참사가 빚어짐. 국가수사본부가 철저한 수사를 다짐한만큼 정확한 원인은 조만간 밝혀질 것. 그럼에도 위험을 외주화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참사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음.

건설업계는 이런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실형을 사는 중대재해로,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함. 더불어 정부는 법을 만들어도 지키지 않는 건설업계 폐습을 바로잡을 실질적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 담당 변호사 및 전문인력

## 입법전략센터



**차동연**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20  
E : decha@draju.com



**이승철**  
고문

T : 02-3016-8706  
E : sclee@draju.com



**윤형석**  
변호사

T : 02-3016-8737  
E : hsyoon@draju.com

## 중대재해처벌법대응본부



**김영규**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23  
E : ykkim2@draju.com

## 인사/노무팀



**장성욱**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724  
E : sujang@draju.com



**최선애**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398  
E : sachoi@draju.com

## 해상항공팀



**성우린**  
변호사

T : 02-3016-5393  
E : wrsung@draju.com

## 에너지/인프라팀



**박미현**  
에너지/인프라 총괄변호사

T : 02-3016-8731  
E : mmpark@draju.com

## ESG 본부



**이상봉**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276  
E : sblee@draju.com



**기소현**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02  
E : shki@draju.com

## 지적재산권팀



**최종선**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288  
E : jschoi@draju.com

## 정보보안팀



**정상영**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347  
E : syjeong@draju.com

## 바이오팀



**허수진**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267  
E : sjhuh@draju.com